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21.03.1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1.2.26.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3.4.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의안번호 제2571호).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3건으로, 취득3건임.**

○ 취득 (3건)

① 기존 어린이집 건물이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취약시설로 판정됨에 따라 어린이집과 어르신사랑방 건물을 재건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양천구 보육타운 신축

② 자연생태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짐

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기존 연의생태학습관 증축

③ 파리공원 내에 주민들에게 파리공원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커뮤니티센터 신축

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재산

○ 취득재산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천원)(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구분	소재지	면적(㎡)				
1	건물	신정동 330-13	4,160	14,305,000	2021년 ~ 2025년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	
2	건물	신정동 1320-9	383.36	1,603,529	2021년	연의생태학습관 확충 건립	
3	건물	목동 906	255	1,172,400	2021년	파리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	

5. 검토의견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3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가.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소유자	재산가액(단위:천원)				비고
소재지	취득면적(㎡)			토지		건물		
	토지	건물		공시지가(천원/㎡)	금액	단가(천원/㎡)	금액	
신정동 330-13	-	4,160	양천구	-	-	3,438.7	14,305,000	

- 신나는 어린이집 건물이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취약시설로 판정됨에 따라 어린이집과 어르신사랑방 건물을 재건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양천구 보육타운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 사업 근거는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 계획 〔출산보육과 1893-(2021.2.1.)〕입니다.

- 총 사업비는 143억5백만 원으로 연도별 사업비와 재원조달, 재원별 사업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연도별 사업비

계(천원)	2021	2022	2023	2024	2025
14,305,000	562,000	2,454,000	2,834,000	3,695,000	4,760,000

◎ 재원조달

계(천원)	국비(4.1%)	시비(1.3%)	구비(94.6%)
14,305,000	599,000	191,000	13,515,000

◎ 재원별 사업비

계(천원)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14,305,000	12,270,000	562,000	858,000	295,000	320,000

- 취득 물건의 소재지는 신정동 330-13번지이고, 사업규모는 연면적 4,160제곱미터에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양천구 보육타운 신축 안】

구분	면적(㎡)	용도(전용면적)	비고
지상4층	460	장난감도서관 및 열린육아방*	
지상3층	900	육아종합지원센터*, 급식관리지원센터*	공용
지상2층	900	어르신사랑방*, 그림책도서관**, 키움센터**	면적
지상1층	900	구립 어린이집*	30%
지하1층	1,000	부설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계	4,160	*기존시설 확장 이전 **신규시설	

- 사업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입니다.

○ 종합의견

- 본 취득계획안 사업 근거는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 계획〔출산보육과 1893-(2021.2.1.)〕에 근거하여 30년 된 신나라 어린이집과 어르신 사랑방 건물을 재건축하려는 것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의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사업의 필요성, 관련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나. 연의생태학습관 확충 건립사업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단위:천원)		비고
소재지	면적(㎡)	건 물		
		단가(천원/㎡)	금액	
신정동 1320-9	계 : 702.73㎡ 기존 : 319.37㎡ 증축 : 383.36㎡	4,150	1,603,529	

- 자연생태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기존 연의생태학습관을 수평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근거는 연의생태학습관 확충 건립사업 추진계획 〔공원녹지과-8884(2020.10.14.)〕입니다.
- 총사업비는 16억3백5십2만9천 원으로 재원조달은 전액 구비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천원)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1,603,529	1,500,000	80,529	23,000	-	-

- 취득 물건의 소재지는 신정동 1320-9번지이며, 사업규모는 면적 383.36제곱미터에 지상1~2층 수평 증축하는 것입니다.

【연의생태학습관 확충 건립사업 안】

구분	증축 전		증축 후		증감	비고
	면적(㎡)	용도	면적(㎡)	용도		
지상2층	131.40	관리사무소	339.96	관리사무소 체험실	증 208.56	수평 증축
지상1층	187.97	관리사무소 화장실	362.77	관리사무소 화장실 전시실	증 174.8	
계	319.37		702.73		증 383.36	

- 사업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계약 방식은 일반 경쟁입찰입니다.

○ 종합의견

- 본 취득계획안은 연의생태학습관을 수평증축하여 지상1층 전시실, 지상2층 체험실을 추가 확장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자연생태 체험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의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사업의 필요성, 관련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다. 파리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소유자	재산가액(단위:천원)				비고
소재지	취득면적(㎡)			토지		건물		
	토지	건물		공시지가(천원/㎡)	금액	단가(천원/㎡)	금액	
목동 906 파리공원	-	255	양천구	-	-	4,597	1,172,400	

- 파리공원은 한국과 프랑스 통상수호조약을 맺은 이후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조성된 공원입니다. 공원의 역사와 상징성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파리공원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계획 〔공원녹지과-9953(2020.06.03.)〕입니다.
- 총사업비는 11억7천2백4십만 원으로 재원조달은 전액 구비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천원)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1,172,400	900,000	92,400	180,000	-	-

- 취득 물건의 소재지는 목동 906번지이며, 사업규모는 면적 255제곱미터에 지상1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파리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 안】

구분	면적(㎡)	용도	비고
지상1층	255	아카이브, 다목적 커뮤니티홀, 창고 등	

-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이며 계약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입니다.

○ **종합의견**

- 본 취득계획안은 파리공원에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여 한국 - 프랑스 통상수호조약 100주년을 기념하는 아카이브, 다목적 커뮤니티홀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공원의 역사와 상징성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의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사업의 필요성, 관련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관 계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11.15, 2015.10.30>